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79
----------	---------

제안년월일 : 2019년 11월 28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상품권의 명칭을 서울에 특화해 변경하는 한편, 판매대행사의 지정, 가맹점의 등록 취소, 세부 사항들에 대한 시행규칙 위임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입법적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을 변경함.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재정의함(안 제2조).

다. 가맹점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라.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7조).

마. 업무대행사의 기능과 역할 구체화 및 대행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1조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제4호

에 따른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운영대행사”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상품권의 사용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안 제4조 제2항 중 “5년의 범위 내에서”를 “5년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을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안 제6조를 제8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6조와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6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위법행위에 이용하거나 위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또는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이하 “발행등”이라 한다)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내용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발행 등의 업무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안 제8조(제10조) 제1항 중 “상품권률”을 “상품권을”로 하고,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안 제9조(제11조) 중 “제8조”를 “제10조”로, “제7조 제3항”을 “제9조제3항”으로,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u>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서울특별시 <u>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u> 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u> 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 <u>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u> ”란 그 명칭 또는 형태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u>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u> 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p>	<p>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p> <p>3. “운영대행사”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p> <p>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상품권의 사용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p> <p>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과 같음></p> <p>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② <현행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 1회에 한하여 <u>5년의 범위 내에서</u>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u>시</u>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제5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p>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 1회에 한하여 <u>5년의 범위에서</u>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u>서울특별시</u> (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제5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p>	<p><u>③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u> <u>2.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u> <u>3. 제6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u> <p><u>제6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u> <u>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u> <ol style="list-style-type: none"> <u>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u>

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운영대행사의 선정) 시장은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거나, 중앙 정부 등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p> <p>제7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p>	<p>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p> <p>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위법행위에 이용하거나 위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8조(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또는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이하 “발행등”이라 한다)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내용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발행등의 업무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사업 및 지원) ①~③ <현행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 운영대행사의 선정·관리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할인판매,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8조(자치구 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자치구별 혹은 권역별 <u>상품</u></p>	<p>제10조(자치구 지원) ① _____ ----- <u>상품</u></p>

제 정 안	수 정 안
<p><u>권</u>을 발행·유통하는 경우 그 경비를 정액 또는 정률로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행 총액 2. 보조받으려는 금액과 산출 근거 3. 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p>③ <u>제2항</u>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u>권</u>을----- -----.</p> <p>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u>제1항</u> ----- ----- -----.</p>
<p>제9조(재정지원의 조건)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자치구를 지원할 때에 제7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6조에 따른 공통 운영대행사 이용 등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제11조(재정지원의 조건) --- 제10조 ----- 제9조제3항----- 제8조 -----.</p>
<p><신 설></p>	<p>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운영대행사”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상품권의 사용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위법행위에 이용하거나 위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또는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이하 “발행등”이라 한다)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내용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발행등의 업무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 운영대행사의 선정·관리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할인판매,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자치구 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자치구별 혹은 권역별 상품권을 발행·유통하는 경우 그 경비를 정액 또는 정률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행 총액
2. 보조받으려는 금액과 산출 근거
3. 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의 조건)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자치구를 지원을 할 때에 제9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8조에 따른 공동 운영대행사 이용 등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